

□ 정부시책 □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 1. 특정전기사업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전기사업은 일반전기사업과 발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유일한 일반전기사업자이며 공기업인 한전이 발전·송전·배전을 수직통합하여 국내 발전설비의 약 95%를 운영하면서 송전·배전 및 전기판매에 있어서는 전국을 독점하고 있으며, 민자발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는 국내 발전시장의 나머지 5% 정도를 점유하면서 발전한 전기를 한전에 공급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번 조치로 산업자원부는 전기를 발전하여 전기를 단위로 특정될 공급지점의 소비자에 대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전기사업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전력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제고를 위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11. 16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단계에 있으며 1차적으로 발전 및 배전 부문에 제한적인 경쟁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정전기사업제도의 도입이 추진된 것이다.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있어 요금 등

공급조건이 인가제로 운용되는데 반하여 특정 전기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공급 지점의 전기 소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사업이므로 요금 기타 공급 조건은 신고제로 운용된다. 또한 특정전기사업에 소요되는 전기의 부족이 생긴 경우, 한전이 그 특정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것과 그 공급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기 택송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특정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와 공급 지점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일정한 택송료를 부담하고 한전의 송배전선으로 활용하여 전기를 수송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특정전기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기업이 전기공급의 외주(Out sourcing)를 통하여 전기설비를 외국 전력회사에 매각하고 발전전력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자유치도 기대된다.

### 2. 전기직공급 범위 확대

현재 한전이 전기판매에 있어서 전국을 독점

하고 있는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 발전사업자가 발전용 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 구내에 있는 겸업설비 또는 사원용 주택에 대하여 공급 지점마다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와 자가발전 설비설치자가 임여전력을 일반전기사업자나 동일 건물에 공급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전기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산업자원부는 발전사업자의 예외적 전기적공급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전기사업으로 간주하는 한편, 자가용 발전설비 설치자가 계열기업 등 자본적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잉

여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특정전기사업자 제도의 신설과 함께 배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계열기업간 발전설비 공동이용,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전기적공급 등으로 전력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전기공급에 필요한 전기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전기를 재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산업자원부, 핵심자본재 국산화 4조3,000억 지원 계획

정부는 기계류·부품·소재 등 핵심자본재 국산화를 위해 4조3천억원의 개발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회의실에서 핵심자본재 5개년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내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핵심자본재 교역규모의 5%인 4조3천억원을 투입, 핵심자본재의 국산화를 대폭 확대해 자본재 무역흑자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핵심자본재 5개년계획에 따르면 그간 매년

생산기업에서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따라 국산화 대상품목을 발굴하던 방식이 국가나 수요기업 차원에서 일괄 발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발굴된 핵심자본재의 50%는 기업이 자체 개발자금으로 국산화토록 유도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정부가 5년간 1조5천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자본재 중소기업의 취약한 생산기반을 보완, 국산 개발된 자본재의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자본재 신기술보급에 대한 산

업기반기금 지원규모를 5년간 4,6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자본재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의 개발의뢰가 있는 경우나 수급기업 협력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를 우선 지원하는 등 새로운 국산화 개발방향과 지원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자본재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 개발자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국산화 개발의욕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확보에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산화 추진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국산화 개발사업 평가와 관련,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는 평가전담제 채택하는 등 산학연 연계에 의한 기술지도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테크노마트 개최, 자본재 수요기업의 역할 강화, 우수한 수요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등으로 수급기업간 연계체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산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보완해 연내에 핵심자본재를 고시하고 관련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자원부, '98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수행 우수과제 선정

산업자원부는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중 기술의 난이도,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무역역조 개선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술개발과제 TOP 12」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를 위한 추가자금(30억원 이내) 지원 및 책임자급 참여 연구원을 공기반사업 우수연구원(Fellow)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업추진시에 우대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와같은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여 산업기술개발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 분위기를 쇄신코자 위함이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은 무담보, 무이자로 총 사업비의 2/3까지 지원하며, 기술개발 결과가 기술적 및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성이 있을 경우 최장 3년, 최대 9억원까지 지원하되 기술개발에 실패할 경우 정부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며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 정부지원자금의 50%(창업한지 7년 이내 중소기업은 30%)만 기술개발 종료후 5년 분할상환이다.

산업자원부에서는 동 사업을 통해 '87~'97년간 총 2,526개 과제(7,267억원)를 선정·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지원과제중 기술개발을 완료한 과제의 연구주관기관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우수기술개발과제를 매년 선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추가자금(30억원 이내) 지원 및 해당과제 연구책임자에 대한 해외연수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금년도에는 '97~'98년간 기술개발에 성공

한 300개 기술과제를 상품화, 기반기술구축 및 산·학·연 공동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개발기술의 난이도,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무역역조 개선효과 등을 전문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수기술개발과제 『TOP 12』를 선정하였으며 전기관련 과제는 아래와 같다.

과 제 명 (주관기관)	개발 내용 및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신뢰성 무정전 전원장치 시스템 개발</li> <li>• 한국전기연구소</li> <li>• 개발기간 : '95. 11~'97. 10(2년)</li> <li>• 정부출연금 : 1.5(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기연구소가 주관이고 기업이 참여하여 개발완료 된 내용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PS를 제어하기 위한 DSP적용 전 디지털 제어장치 개발</li> <li>- 300kVA급 대용량 주정전 전원장치 개발</li> <li>- S/W 방식의 디지털 한시보호 특성 및 온라인 고장진단 기능 등 신뢰성향상 기능등을 개발</li> </ul> </li> <li>◦ 정부출연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개발결과를 참여기업에 이관하여 기술적 파급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산·연 공동연구로의 결과가 우수함.</li> </ul>

## 산업지원부, 공장 입지분야 규제 완화

산업지원부는 공장설립 및 산업입지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 소관법률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이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던 이전명령 및 이전신고 등

을 폐지하고, 기준초과 공장용지에 대한 강제 매각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또한, 변화된 경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의 임대제한을 완화하고, 경매 등으로 인한 산업용지 취득시 신고제도를 폐지했다.

그리고, 제조업이 아닌 벤처기업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설립에 따르는 절차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제처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소관 규제 13건 중 12건을 개선 하였으며,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공장이전명령 및 신고의 폐지

-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서 환경이나 국민경제상 이전이 필요한 이전대상 공장을 지정하여 강제로 이전시키던 제도를 폐지하고 이전명령 미이행시 단전·단수 및 허가취소 등 이행확보 수단도 폐지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
- 이전신고는 수도권에서의 이전동향을 파악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나, 이를 폐지하고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행정기관이 이전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 ② 기준초과용지의 강제매각제도 폐지

-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불필요하게 많은 용지를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이를 행정기관이 강제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과다한 토지보유를 막아 왔으나, 적용이 곤란하고 과도한 권리침해가 되므로 이를 폐지

#### ③ 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 취득시 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기업에게 신고를 폐지하고, 관리기관이 스스로 경매등

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함

#### ④ 산업단지 임대 제한 폐지

- 제조업체의 경우 산업용지의 1/2 이상 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경기변동에 따라 공장 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기업에 애로가 되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임대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부가가치세법상), 관리기관과 입주계약변경만 하면 임대가 자유로움

#### ⑤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범위 확대

- 대도시 주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한 중소 제조업체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그 동안은 제조업체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비제조업 벤처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건설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제조업 벤처기업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영상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복합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함

#### ⑥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

- 공장설립 절차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간소화에 노력을 기울여 절차적인 애로점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공업지역 등에서는 대부분 10

일 이내에 승인 원료) 공장을 설립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들에 의한 행위규제가 적용되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임

- 앞으로는 공업용도로 쓸 수 있는 토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에서도 절차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 일부 제출서류의 승인후 징구, 제출서류의 통합·감축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한 일괄 검토로 처리기간 단축
- 의제처리 범위를 50개 범률 150여 개의 인허가로 대폭 확대(공장설립에 따르는 영업허가까지도 공장설립 및 등록으로 의제 처리해주게 되며, 공장 진입로 조성부지도 공장부지와 같이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게 됨)

#### ⑦ 공장등록 제도를 개선

- 기존의 공장등록 제도를 현실 상황에 적합한 제도로 개선하여, 공장등록증에 따른 민

원인의 혼란과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으면,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도 공장 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은 공장의 사용자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공장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이러한 현황이 있는 그대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 공장 등록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
- 공장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나타낼 수 없는 공장등록증 대신 공장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으로 공장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는, 임대공장 등을 건설하는 경우 업종을 미리 특정하지 않고, 당해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개략적으로 승인을 얻어 공장을 건축하고, 사후에 제조시설을 설치할 때 업종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됨

## 산업지원부, 환경영경영 표준화사업 시행

산업지원부는 환경영영시스템(ISO 14000)에 부합한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 환경무역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환경영영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경영 표준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자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중 산업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총 사업비 36억원(정부지원 25 억원)이 투입된다.

ISO 9000/14000 국내 민간 인정기관인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가 주관 기관으로 선정 됐으며 포항종합제철 등 5개 참여업체와 아주대학교 등 3개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환경영영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평가기술을 조기에 개발·보급, 국내 기업들의 환경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환경친화적인 생산활동과 제품개발로 외국 제품과의 환경성 비교에서도 우위를 선점, 수출증대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환경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종 국제협약이나 규격·기준 등이 제정되는 등 환경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의 경우 환경을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 '93년부터 환경관련 국제규격인 ISO 14000의 5개 분야중 환경영영체계(EMS)와 환경감사(EA)를 국제규격으로 제정, 세계 각국에서 인증제도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환경라벨링, 환경성과평가, 전과정평가(LCA)도 '99년말까지 정식 규격으로 제정, 교역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환경영영 표준화사업은 3가지 과제로 진행되는데 전과정평가 기법 및 영향평가지수 분야의 경우 국내에서 범용성이 높은 100여 개 원료물질 및 공정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또는 지수화해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물질과 공정을 사용토록 하는 것이며 제품의 환경성표시 및 인증을 위한 표준화, 환경성과 평가기법 및 성과 평가지표 개발도 동시에 추진된다.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수출전문인력 지원 계획

중소기업청은 IMF체제 이후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상사 등에 근무하면서 많은 수출 경험을 쌓은 퇴직수출전문인력을 연인원 4,000명 규모로 확보, 내년 초부터

수출희망 중소기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소요예산 40억원을 '99 예산에 반영하였고, 오는 12월중 전문인력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전문인력은 단순히 수출 유경험자뿐만 아니라, 마케팅, 금융, 품질,

디자인 등 수출관련 제반분야에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쌓아온 전문인력으로 중소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전반적인 수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98. 1~9월간 전년동기 대비 0.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대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비 10.4% 감소한데 비해 중소기업 수출은 5.1% 증가하였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IMF 이전 42% 수준에서 지난 8월 45.4%, 9월 45.8%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내수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한 결과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지원시책이 시행될 경우 수출확대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를 통해서 IMF 체제의 조기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시책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서, 앞으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노력을 지속 경주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이용도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수출상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400개 중소기업의 홈페이지와 상품카다로그를 수록하여 운영중인 인터넷 「중소기업관」을 내년말 까지 8,600개 업체를 추가 총 10,000개 업체가 수록되도록 대폭 확충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은 중소기업의 부담 없이 전액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자료수집, 영문번역 작업 등까지도 실업인력을 활용하여 제작·지원 되는데, 이를 위하여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한편, 중진공이 운영중인 인터넷 「중소기업관」 이외에도, KOTRA(80개사), 무역협회(4,500개사) 등 수출지원 기관이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운영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를 상호 연계하여 중소기업 제품수출 홍보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구조개선자금, 기술혁신자금 등 재정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수출 중소기업에게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99년 기술혁신 개발자금 40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IMF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향상을 적극 지원

하기 위하여 '99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규모를 금년보다 80억원이 늘어난

400억원으로 책정, 오는 '98. 12. 14일부터 24일까지 업체들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은 은행을 통해 대출되는 응자금과는 달리 무담보·무보증·무이자 형식의 출연금으로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된다. 이 자금은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 정부출연금의 30%만 성공완료 1년후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자금 신청자격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이며 소프트웨어·공업디자인 서비스업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기술 또는 창업보육센터입주 중소제조업체, 소기업은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업체 선정은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서류 검토 및 사실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를 거친 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의 심의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청·접수 기관은 지방 중소기업청이며 신청·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식은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기술정보방→기술지원시책→기술개발사업)를 이용하거나 각 지방청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 중소기업청, 구조개선자금 輸出 中企 우대

중소 수출기업들은 정부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을 때 시설투자와 관계없이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수출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 자금지원에서 특례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 자금의 금리도 1~2% 포인트 인하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덜어지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기청은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지원이후 시설자금 10.5%, 운전자금 11.5%로 지원해 왔던 구조개선자금의 금리를 9.5%로 크게 낮출 예정이다.

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와 관계없이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생산한 시설재의 수요처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수요자 금융형태의 판로지원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이 자금의 지원자격을 제조업 전

업률 30% 이상으로 낮춰 수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재무구조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수출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제도를 도입해 사업 및 기술성 위주의 과감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중진공의 자금대출 상황 등을 매일 점검하고 신용대출을 독려하는 한편 부

실여건의 발생원인이 담당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면 면책토록 했다.

중기청의 이번 개선책은 과거 은행을 거쳐야 했던 구조개선자금 지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바꿨음에도 중소기업들의 이용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국립품질원, 아·태 7개국과 공인시험기관 상호인정 협정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국가별 시험소인정기구협력체인 「APLAC(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7개국 인정기구와 다자간 시험소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공인시험, 검사기관인정기구(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대표적인 국립기술품질원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APLAC 상호인정위원회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에 통과, APLAC 7개국 인정기구와 다자간 MRA협정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81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및 분석능력과 시험성적서가 APLAC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7개국 5천4백여 시험소와 동등하게 대우받게 돼 수출전에 받던 시험, 검사비용과 시간절감에 따른 수출활성화가 기대된다.

품질원은 특히 정부기관인 품질원 KOLAS의 품질경영시스템이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공인시험기관들의 대외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수출업체 및 외국 바이어들에게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토록 독려하는 한편 정부 및 산하 시험기관은 물론 민간 시험소들도 KOLAS의 인정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